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534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0 선고 2023나534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가소102313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론종결 2024. 4. 5.

판결선고 2024. 5.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3가소102313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제1심에서의 변론과 증거에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000만 원의 이 사건 채무가 C에 의하여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8면의 “을 1호증”을 “을 1, 2호증”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중민, 판사 김소영, 판사 장창국